공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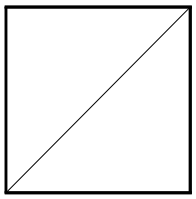

의안번호	제 162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4. 29. (제 8 차)

의결사항

(경남)마산남성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4. 29.

1. 의결주문

(경남)마산남성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남)마산남성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경남)마산남성신용협동조합의 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제5조의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제4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별표 3> I-1.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2020.3.12.) 심의필

<별지>

(경남)마산남성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 ○ ○ ○○○ : **'주의'로 조치 요구**

2. 조치사유

⑴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대리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경남)마산남성신용협동조합 ○○ ○○○는 2019.1.31. ○○○ 및 ○○○(○○○의 ○○ 및 ○○)의 신규 계좌 개설을 대리하면서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이 없었음에도 보관하고 있던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및 도장으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여 정기예탁금 및 적금계좌 각 1건*을 개설한 사실이 있음

* 정기예탁금 재예치 X,XXX,XXX원, 적금 월불입액 XXX,XXX원

<관련법규>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의2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3.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별표 3> I-1.

< 붙임 1 >

관계 법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행정처분) ③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주의
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제2장(유형별 대면 실명거래 방법)-1(계좌에 의한 거래. 가. 개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실명확인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제출시까지 보충되지 않은 백지 위임장은 사용불가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시는 인감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는 동 확인서상의 서명 기재)
-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확인서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위설치법, 금융업관련법 등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생략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하면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할 수 있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별표3>

금융업종별 ·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Ⅰ-1.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1. 관련자의 구분

금융실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행위자 :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자
② 감독자 : 위반행위인 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③ 보조자 :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

2. 관련자에 대한 조치기준

① 법 제3조 위반행위(금융실명거래 위반)

거래금액(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금액. 다만 증권거래계좌의 경우에는 입금액을 말한다)의 다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책임정도*		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유형①	5천만원 이하	견책	주의 이하	주의 이하
	3억원 이하	감봉 이상	감봉 이하	감봉 이하
	3억원 초과	정직 이상		
유형②		주의 이하	-	-

* 유형① : 차명거래, 고객 동의 없는 임의계좌 개설 등 금융실명거래의 기본 취지를 위반
유형② : 실지명의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거래로서 단순절차 위반
(단순절차 위반행위 사항을 시정하는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현지조치 포함) 가능)

< 붙임 2 >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경남)마산남성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0. 5. 1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1명)	주의 1명

4. 제재대상사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대리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9.1.31. ○○ ○○○는 △△△ 및 ☆☆☆(○○○의 ○○ 및 ○○)의 신규 계좌 개설을 대리하면서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이 없었음에도 보관하고 있던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및 도장으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여 정기예탁금 및 적금계좌 각 1건*을 개설한 사실이 있음

* 정기예탁금 재예치 X,XXX,XXX원, 적금 월불입액 XXX,XXX원

<관련규정>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상호금융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86	02-3145-8796